

ESG Policy Book

Contents

Environment

환경 정책	03
녹색구매 정책	05

Social

안전보건경영 정책	06
인권경영 정책	07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10
공급망 정책	12
공급사 행동규범	14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	19

Governance

조세 정책	2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23
반부패 준수 지침	24
윤리규범	27

Environmental

환경 정책

Environmental Policy

2025.03.24 개정 | 2023.03.20 제정

<p>목적</p>	<p>본 정책은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포스코DX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환경보호 및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적용 범위</p>	<p>본 정책은 포스코DX에게 적용된다. 포스코DX와 거래하는 협력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p>
<p>기본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①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영향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에너지 관련 국제 협약 및 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폐기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친환경 생산공정 도입과 환경오염 방지 최적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p>② 기후변화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자체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며 성과를 자체 평가한다. · 화석연료 및 화석원료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p>③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자연환경 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녹지·산림·습지·해양 등 지구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확대 및 신규 설치 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철수 시 재조림, 녹지화 등 기존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노력한다. <p>④ 원부자재 및 용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제품의 자원사용량을 고려하고, 사용하는 자재를 재생가능한 원료, 불순물이 적은 원료 등의 친환경 물질로 대체하거나, 절수기 설치와 같이 자원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신규 설비 혹은 청정생산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p>⑤ 폐기물 및 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폐수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생한 폐기물 및 폐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활용하며, 사업장 밖으로 배출하는 폐기물 및 폐수에 대해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폐기물 처리 또는 정수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p>⑥ 유해화학물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출, 누출 등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이용 및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실행 방안

①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 회사의 사업활동에 특유한 환경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관리시스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고, 환경 관련 구체적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이사회와 경영진은 환경관리시스템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환경관리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실무진을 두어 인적·물적으로 지원한다.
- 환경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각 회사의 사업 실정에 맞게 기존 정책에 환경 관련 요소를 포함하고, 필요시 생물 다양성·산림·습지·기후리스크 등 세부 환경 분야에 대한 구체적 정책·지침·사규를 수립하여 준수한다.
- 협력업체, 공급사,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자에게도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소통하고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임원 및 부사장은 소속 임직원들이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관리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②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 관련 전환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를 전사적인 리스크 평가 체계 및 경영 전략에 통합하고,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전략 평가는 이사회·경영진에 적절히 보고되도록 한다.
-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한다.
- TCFD 등 기후변화 관련 인증·공시 프레임워크에 따르거나 이에 준하는 방안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현황을 합리적 범위에서 공개한다.

③ 생산 및 사업장 환경 관리

- KPI 등 목표 관리, 교육/훈련, 지침 수립 및 관리, 내부 심사 등의 프로세스 절차를 통해 생산 및 사업장의 환경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친환경 생산공정과 최적 방지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 및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 생산시설·사업장 특성에 맞춰 환경경영 매뉴얼을 제정·운영하며, 설비 가동 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사업장 개설·확대 및 철수 시에는 생태계 및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철저히 리스크를 평가하고 순환경영향 제로를 위해 노력한다. 산림 및 습지를 파괴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산림 습지 복원 활동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최선의 방향을 모색하고 실시한다.

④ 제품 및 서비스 개발·유통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 속 위기와 기회요인을 인지하고, 친환경 제품 및 부산물의 공급 확대, 운송·물류 과정에서의 환경 리스크 평가를 통해 제품·서비스 개발 및 공급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 저탄소·친환경·신재생에너지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⑤ 공급망 관리, 업체 선정 및 평가

- 외부 업체(공급·계약·서비스 제공) 선정 시 환경관리 수준 등을 평가 항목을 반영함으로써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다.
- 공급사·협력업체가 높은 수준의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체적 공급사 환경경영 성과평가를 통해 공급망 전체의 환경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 자재·비품의 조달 시 녹색구매 정책을 준수한다.

⑥ 신규 프로젝트 및 인수·합병

- 신규 사업/투자 검토·과정에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의 환경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 인수·합병 검토 시 사전 실사를 통해 환경 리스크를 파악하여 사전 대응한다.

Environmental

녹색구매 정책

Green Procurement Policy

2024.04.01 제정

<p>목적</p>	<p>본 정책은 포스코DX가 사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 친화적인 경영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구매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적용 범위</p>	<p>본 정책은 포스코DX 및 그 임직원에 해당한다. 포스코DX의 전 사업장, 해외법인 및 그 임직원과 포스코DX와 각종 거래 관계를 갖는 고객, 협력사 및 계약사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p>
<p>용어 정의</p>	<p>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녹색구매'란 원부자재·집기비품 등 사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을 조달하는 단계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공급·유통·후처리 과정의 환경성을 평가하여 구매 계약 및 공급망 관리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구매 활동을 말한다. ②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제품 내지 아래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환경표지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표지 인증 받은 제품 및 동 기준에 적합한 제품 나. 저탄소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다. 우수재활용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정하고 공고한 재활용제품
<p>기본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부자재 조달, 공정, 운영, 물류 유통, 폐기물 처리 등 사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친환경성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실질적인 녹색구매 활동을 실천한다. ②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경영 실천을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에서의 자재 구매 활동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집기비품 등 소모성 자재를 비롯하여 전사적 구매 업무에서 녹색구매를 실천한다.
<p>실행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녹색구매 적극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자재부터 기업용 소모품, 비품, 토목, 건축, 전기, 화학 설비 및 서비스 등 구매 절차에 녹색제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시장에 관련 인증 제도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는 이유 등으로 녹색제품 구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활용 원재료 사용 여부, 유해화학물질 포함 여부 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품 및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공정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등 접근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가능한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한다. ② 녹색구매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녹색구매 실천 및 녹색구매 활동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녹색구매 현황 모니터링, 녹색제품 및 녹색 공급처의 발굴 및 도입, 녹색구매 실적 평가 및 중장기 목표 수립 등 녹색구매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 녹색구매 실적 및 목표 등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③ 공급망 내 녹색구매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협력업체, 공급사 등 거래 상대방에도 녹색구매 실천을 장려하며, 구체적으로 녹색구매 정책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협력업체 선정 시 고려한다.

Social

안전보건경영 정책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Policy

2025.03.24 개정 | 2024.04.01 제정 | 담당부서: 안전보건센터 | 승인자: 대표이사

목적	본 정책은 포스코DX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내외 법규 및 기준 등을 준수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산업안전보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편의와 안정에 최적화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정책은 포스코DX 및 그 임직원에게 적용되고, 포스코DX와 거래하는 협력사 및 그 임직원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사업장<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의 모든 시설 및 운영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 순위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개선하며, 성과 판단을 위한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하여 유해위험 요인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며,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② 제품 및 서비스<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제품 및 서비스 안전보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슈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파악한 이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목표를 설정한다. 이러한 이슈 및 목표를 고객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③ 임직원 건강 증진<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건강을 증진하며, 정신 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 및 관리하고, 필요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한다.
실행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산업안전보건 관련 유해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체적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이사회와 경영진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시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다.③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 임직원들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④ 비상상황 발생 시 이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한다.

Social

인권경영 정책

Human Rights Management Policy

2024.04.01 제정 | 담당부서: 경영기획그룹 | 승인자: ESG위원회

<p>목적</p>	<p>본 정책은 포스코DX가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등 인권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며,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노동원칙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인권경영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적용 범위</p>	<p>본 정책은 포스코DX에 속한 국내외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당사와 각종 거래 관계를 갖는 협력사 및 계약사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p>
<p>기본 원칙</p>	<p>① 기본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을 존중하여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에는 생명과 신체적 안전,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가정생활과 사생활의 자유, 식량과 물, 고문, 노예제도 또는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공정하고 품위 있는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차별금지 등이 포함됨을 인정한다. 이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방지와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해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임직원은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권장사항을 준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활동을 하는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법규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글로벌 인권기준을 준수한다. 현지국의 상반되는 규제에 직면하는 경우, 글로벌 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 이슈로 중요하게 다룬다. <p>② 주요 인권 이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과 같은 인권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리스크를 전사적 차원에서 관리하며 인권존중 책임을 수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금지 <p>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으며, 직무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다. 성별 및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 없이 동일가치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동일임금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p>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p>인신매매를 포함한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배상액 예정을 금지하고, 금전대차를 이유로 근로자의 신분을 구속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추가적인 강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미성년자 노동조건 및 최저 노동 연령기준은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한다.</p>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p>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에서 규정한 노동기본권에 준하여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 가입의 자유를 인정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지 않으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한다.</p> 산업안전 보장 <p>모든 종류의 재해와 작업 관련 질병은 예방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전사적인 보건안전 정책을 마련하여 국제적 수준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p>

기본 원칙

- 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방지함으로써 인간 존중 직장문화를 구현한다.
- 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및 아동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사의 인권 리스크를 관리한다. 또한 협력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협력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⑦ **부패 및 뇌물방지**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UN부패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을 포함한 모든 국내외 뇌물 및 부패방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 ⑧ **환경권 보장**
 화석 연·원료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친환경 경영을 수행한다.
- ⑨ **지역주민 인권 보호**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사업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그 지역에 사회 및 환경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인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며 지역 환경과 주민의 안전, 보건, 식량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지역의 문화 보전 및 생물의 다양성 문제도 함께 고려한다.
- ⑩ **고객 인권 보호**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여 고객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한다.

실행 방안

- ① **인권경영 거버넌스**
 인권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과 방향 설정 및 인권경영 이행 모니터링은 인권경영 전담 부서에서 수행한다. 인권경영 전담 부서는 인권 교육, 정보 공개, 인권 실사, 피해자 구제 등을 수행하며, 중요 이슈 발생 시에는 이사회 산하의 전문위원회인 ESG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다.
- ② **인권실사**
 가) **핵심 고려요소**
 포스코DX는 인권경영 전담 부서를 통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여 예방 및 완화하고, 인권경영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실사를 실시한다. 이 절차는 인권에 대한 실질적·잠재적 영향 식별 및 평가, 발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대응 활동에 관한 기록,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인권실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 ①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인권 관련 부정적 영향을 포함시킨다.
 - ② 사업장의 소재와 규모, 인권 관련 위험성, 사업의 특성과 내용, 현지국의 정치·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 ③ 회사의 활동과 사업운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인권에 미치는 위험도 점차 변화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나) **실시방법**
 국내외 사업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잠재적·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노력을 다음의 프로세스에 따라 실시한다.
 - ① 국내외 주요 사업장에서 인권 관련 리스크가 감지되는 경우에는 인권실사를 통해 현상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② 실사는 내부 전문가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③ 실사는 OECD, UNGP, UNGC, ILO 등 국제 인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산업 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실시한다.
 - ④ 경우에 따라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개별심층 면접(In-depth Interview)과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여, 인권실사를 통해 식별된 인권 리스크와 교차 검증을 실시하고 세부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한다.
 - ⑤ 실사 시에는 잠재적·실질적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파악된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전사적 차원에서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절차를 수행하여 방지·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이미 발생한 실질적 영향은 구제(Remedy) 및 해결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실행 방안

다) 대응 및 후속조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완화를 위한 인권 실사로부터 발견한 사실을 기반으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후속조치를 취한다.

① 내부 대응체계 확립

- i.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부서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 ii. 내부 의사결정, 예산 할당, 감시 절차를 이러한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한다.
- iii. 인권실사를 통해 도출한 문제를 유관부서에 정확히 이해서시키고 중요사안으로 관리하여 대응한다.

② 후속조치 및 구제

- i.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거나 가능성이 있을 때 이의 방지,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필요 조치를 취한다.
- ii. 최선의 정책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도 예견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체와 협력하여 부정적 영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iii. 직접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정적 영향이 다른 주체(예: 공급사)와의 관계에서 기업의 운영 및 서비스와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직접적 책임은 없으나 소정의 역할을 담당한다.
- iv. 회사가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주체와 협력하여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 v. 효과적인 구제 수단으로서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한다.

라)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이해관계자들이 인권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경우 책임감을 갖고 소통한다.

- ① 영향을 받는 집단, 개인과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책임성과 투명성에 입각하여 의사소통하며, 이해관계자들이 용이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면회의, 공식보고서 발행, 온라인 채널 활용(예: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 등 다양한 의사소통 형태를 고려한다.
- ② 공식 보고서 발행 시에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포함하며, 보고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검증 절차를 고려한다.
- ③ 이해관계자들이 특정 인권영향과 관련하여 회사가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마) 내재화 및 제도 개선

인권 실사 결과를 기반으로 조직문화 내재화, 제도 개선 활동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 ① 전 임직원에게 대한 공감대 형성 교육, 인권경영 관련 규범에 관한 교육, 성공 및 실패 사례 공유 등 인권경영을 조직문화로 내재화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 ② 전문가의 자문,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제도 실행을 통한 개선점 발굴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권경영 제도 개선을 수행한다.

㉓ 고충처리제도

- 제기된 문제가 신속히 논의되고 구제될 수 있도록, 부정적 영향을 받는 개인과 이해관계자를 위한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한다.
- 윤리신고센터, 사이버 신고 등 기존 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신고자, 피해자 및 협조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조사 신청 및 이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고충처리제도는 회사의 인권존중 책임과 관련해 다음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이들은 인권과 관련된 우려 사항을정도경영그룹에 직접방문, 우편, 전화, E-mail 등의 방법으로 신고, 고충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고충 수렴 및 피해자 구제를 조기에 직접 다루어 인권 피해의 확산을 막는다.
 - ③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인권정책 및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한다.

Social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Policy

2024.04.01 제정

<p>목적</p>	<p>본 정책은 포스코DX 전 임직원에게 대한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개선하고, 직장 내 차별, 괴롭힘 및 성희롱을 방지하여, 임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적용 범위</p>	<p>본 정책은 포스코DX 및 그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포스코DX의 전 사업장, 출자법인 및 그 임직원과 포스코DX와 거래하는 협력사 및 그 임직원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p>
<p>기본 원칙</p>	<p>① 다양성 및 포용성</p> <p>다양성은 문화, 성별, 국적,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사회적 경제적 지위, 능력 등 임직원의 특성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고, 포용성은 모든 임직원이 조직에 소속감을 가지고 업무에 참여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과 포용성은 조직 구성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여 포용적인 근로환경을 유지한다. ② 모든 임직원이 회사 업무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 경험, 지식을 활용하여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③ 임직원이 개인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간, 장소, 방법 등에서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조직 간의 벽을 없애고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개방적인 기업문화를 지향한다. ⑤ 임직원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킹 그룹을 마련한다. ⑥ 특정 임직원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장애를 이유로 그들을 회사에서 소외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⑦ 다양한 세대가 각기 다른 능력을 제공하면서 공존하고, 다양한 배경, 국적, 인종의 임직원이 모여 함께 일하는 곳을 인식한다. ⑧ 결혼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유무 등 가족 관계가 서로 다른 모든 임직원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⑨ 능력에 기반한 승진 제도를 도입한다. ⑩ 임직원 채용, 관리, 교육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이 사용되는 경우, 특정 그룹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p>② 형평성</p> <p>형평성은 임직원이 개인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승진, 채용, 교육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준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 여부, 성 정체성 등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② 회사, 계열사, 공급·협력업체 내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성별이 적은 부서의 경우, 합리적 수준의 성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를 마련하여 실천한다. -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를 분석하여 매년 공개한다. - 회사의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는 인원의 성비를 균등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고 실천한다. -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여성 임직원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직장 내 개인의 성장이 성별을 이유로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동일한 업무, 가치가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 학력에 따른 편견 없이 타인을 대우한다.

기본 원칙

③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의 행위(유사한 행위 포함)는 금지된다.

- ① 신체적인 괴롭힘
- ② 정신적인 괴롭힘
- ③ 업무적인 괴롭힘
- ④ 개인적인 괴롭힘

④ 성희롱 금지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실행 방안

- ①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개선하고 직장 내 차별,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 ② 경영진 또는 이사회는 본 정책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상담, 조사 및 처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며, 특히 성희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담 및 신고 센터를 전담조직으로 운영한다.
- ③ 누구든지 이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전담조직에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춘다.
- ④ 전담조직은 본 정책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부서 전환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⑤ 피해자 및 협조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Social

공급망 정책

Supply Chain Policy

2024.12.05 개정 | 담당부서: 구매협력그룹 | 승인자: 대표이사

<p>목적</p>	<p>본 정책은 포스코DX가 공급망 및 협력사들과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적용 범위</p>	<p>본 정책은 포스코DX에게 적용된다. 포스코DX는 거래하는 공급사 및 협력사(이하 통칭하여 '협력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더 나아가 포스코DX는 협력사가 자신들의 협력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p>
<p>협력사 행동규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① 인권</p> <p>협력사는 UN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과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등에 따라 불법적 미성년자 노동, 인신매매, 강제 노동 등을 용인해서는 안되며, 모든 근로자의 인권, 근로시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p> <p>② 환경</p> <p>협력사는 환경관련 규제와 법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환경경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기 위한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제품의 개발, 생산,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협력사는 화석연료 및 화석원료의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p> <p>③ 보건·안전</p> <p>협력사는 전사적인 보건·안전 정책을 마련하여 국제적 수준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작업장에서의 사망사고, 부상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모든 직원들이 재해와 작업 관련 질병으로부터 보호되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협력사는 제품 생산에 있어 소비자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p> <p>④ 부패방지</p> <p>협력사는 모든 유형의 부패행위, 금품요구 및 부정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위를 용인해서도 안 된다. 협력사는 국내외 뇌물 및 부패방지 법을 및 규정을 준수하고, 기본에 철저히 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 활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에 노력한다.</p> <p>⑤ 공정거래</p> <p>협력사는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경쟁사와 생산, 가격, 입찰, 시장분할 등에 관한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및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거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며, 경쟁사 정보를 포함한 기업 정보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만 취득하고 활용해야 한다.</p> <p>⑥ 자금세탁 및 탈세 등 방지</p> <p>협력사는 국내외적으로 불법자금의 세탁, 탈세 및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자금의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들을 준수한다.</p> <p>⑦ 이해상충 방지</p> <p>협력사는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거나 고려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회피해야 하고, 회사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모든 기밀정보 또는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p>

<p>협력사 행동규범</p>	<p>⑧ 내부신고제도</p> <p>협력사는 근로자들이 비윤리적 행위나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는 내부신고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러한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p> <p>⑨ 임금</p> <p>협력사는 최저임금, 급여, 잔업수당, 급여 공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모든 임금 관련 법률들을 준수한다.</p>
<p>실행 방안</p>	<p>①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실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들이 본 정책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못해 공급망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리스크를 확인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 협력사 선정 시, 협력사가 본 정책의 협력사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공급망에 속한 협력사와 계약하는 경우, 협력사가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고, 협력사가 그들의 협력사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급망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인권, 환경, 제품 안전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망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공급망 실사에는 공급망에서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 영향의 식별과 평가,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개선하기 위한 실행계획 마련 및 이행, 실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이해관계자가 고충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실사의 대상이 되는 공급망의 범위는 포스코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1차 협력사 또는 2차 이상 협력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실사를 통해 협력사의 본 정책 이행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사의 기업활동 과정에서 초래된 부정적 영향을 개선 및 완화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과 이행을 협력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리스크 개선노력이 미흡하여 협력사의 부정적 영향 리스크가 완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협력사와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p>②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관계 구축</p> <p>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노력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의 권리(지식재산권, 물적 권리 등)를 존중하며, 협력사와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 속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협력사와 성과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협력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협력사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협력사에 대한 대금결제 환경 개선, 기술 및 금융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고, 협력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기업 생태계의 전체적인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 협력사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공급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2024.12.01 개정 | 2010.06.21 제정

<p>목적</p>	<p>포스코DX는 국내외 법률, 필수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며, 모든 공급사와 그 하도급사 이하 “공급사”)에게 포스코DX의 행동규범을 공유하고 이에 맞춰 행동할 것을 기대합니다. 포스코DX 공급사 행동규범 (“행동규범”)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근로자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 보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경영 관리 등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때 공급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p> <p>본 규범은 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및 경영시스템 총 5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Code of Conduct ver:8.0 을 참조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본 규범과 현지 법률이 상충될 시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p>
<p>공급사 행동규범</p>	<p>① 노동</p> <p>공급사는 기업활동 전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근로자, 이주 근로자, 실습생, 단기 계약 근로자, 직접 고용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현지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p> <p>① 강제노동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모든 근무와 작업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 계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공급사는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등 모든 비자발적 노동)을 강요하거나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부채를 지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노동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공급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 허가증과 같은 신분 및 이민관련 원본 서류를 근로자 본인이 보관하게 해야 합니다. • 채용 혹은 근로계약 변경시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며, 근로 계약에 관련된 서류를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p>② 아동근로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고용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고용을 위한 최소 연령은 공급사가 위치한 국가의 현지 법률 및 규정 또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하는 기준 중 더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아동 근로자가 발견된 경우, 공급사는 즉시 그 고용을 중지하고, 고용과정에서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 만 18 세 미만의 근로자는 야간 근무, 초과 근무를 비롯해 안전 보건상 위험한 공정에 투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p>③ 근로시간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은 현지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모든 초과근무는 자발적이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급사는 근로자에게 1 주에 최소 1 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p>④ 임금 및 복리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 임금, 초과 근로 수당,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해야 하며 임금과 관련된 현지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근로자가 알아보기 쉬운 급여 내역서를 제공하여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급사 행동규범

⑤ 차별금지/괴롭힘 금지/인도적 대우

- 공급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성희롱이나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그러한 대우를 할 것이라는 위협도 없어야 합니다.
- 공급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정책과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이행하며,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합니다.
- 공급사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 채용 및 고용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출신 민족 또는 출신 국가,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국적, 유전정보, 결혼 여부 등에 근거해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 현지 법률 및 규정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차별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의료 검진 및 신체 검사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공급사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업무 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종교적 관습을 준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⑥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 공급사는 현지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단체 교섭권,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그러한 활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 교섭 권리를 방해하기 위한 비합법적인 민간 또는 공권력을 동원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무조건 및 경영 관행에 대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안전보건

공급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이 업무 관련 재해와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생산의 일관성, 직원 근속 및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사는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① 산업 안전보건

- 공급사는 근로자가 안전 및 보건 위험(예: 화학,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및 추락위험 등)에 노출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장 설계, 기술적 및 행정적 통제, 예방장비, 안전 규정 마련, 안전 조치 및 교육을 실행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공급사는 근로자에게 위험요인에 관한 교육 자료와 작업 시 필요한 개인 보호구를 제공하고 관리 및 감독해야 합니다.
- 또한, 임신부 또는 수유기 여성근로자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 배치하지 않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유기 여성 근로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② 비상사태 대응

- 공급사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 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함으로써 인명 피해와 환경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이러한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에는 비상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 근로자에 대한 공지 및 대피 절차 마련, 근로자 대상 비상대피훈련, 탈출 시설, 화재 감지, 소화 장비 복구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 비상 계획에는 적절한 화재 감지 및 진압 장비, 장애물이 없고 탈출이 가능한 출구 시설, 비상 대응 담당자 연락처 정보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비상훈련은 최소 매년 또는 현지 법률이 요구하는 주기에 따라 시행하되, 더 엄격한 기준을 따라 실시합니다.

③ 산업재해 및 질병

- 공급사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와 직업병 등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 추적, 보고절차 및 시스템을 제정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여기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보고 장려, 상해 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의학적 치료 제공, 재해 및 질병 발생시 시정조치 이행, 업무 복구 지원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급사는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산업재해 및 질병의 위험이 완화될 때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④ 산업 위생

- 공급사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것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 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잘 관리된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무료로 제공하고, 근로자는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급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지속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작업장 위해 요소와 연관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⑤ 육체노동

- 공급사는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노동을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공급사 행동규범

⑥ 위험 기구 및 안전관리

· 공급사는 위험설비를 분류하여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물리적 방호장비, 안전장치 그리고 방호벽 등을 제공하고 해당 설비에 대해 적절한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⑦ 위생, 식품 및 주거

· 근로자에게 청결한 화장실,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 및 보관시설, 식당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숙사는 청결과 안전을 유지하며, 조명, 적절한 비상구와 냉난방 및 환기시설, 개인 사물함, 합리적인 수준의 적절한 개인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⑧ 안전보건 커뮤니케이션

· 공급사는 근로자에게 기계, 전기, 화학, 화재 및 물리적 위험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 현장 위험에 대해 적절한 안전보건 정보와 교육을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같은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안전 보건 정보 및 교육은 해당하는 경우, 성별 및 연령과 같은 인구 통계적 위험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급사는 근로자가 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우려사항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④ 환경

공급사는 환경보호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임을 인식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사는 사업활동 및 제조 운영에 있어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환경 및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① 환경 인허가 취득 및 보고

· 공급사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 및 등록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하며 최신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오염 방지 및 자원 보존

· 공급사는 환경 오염 제어 장비 증설, 생산, 유지보수 및 시설 프로세스의 보안 등을 통해 오염 물질과 폐기물 배출량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물, 화석연료, 광물, 원시림 산물, 토지, 토양, 습지 및 숲 등의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원주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 철거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③ 유해물질

· 공급사는 미나마타 협약, 스톡홀름 협약, 바젤 협약을 포함한 관련 법률 및 규정, 사양 및 국제 표준을 준수하며 인간이나 환경에 위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해 물질을 파악, 식별하고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유해 화학 물질은 안전한 저장, 운반,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폐기를 위해 라벨을 표기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사는 유해 폐기물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문서화하여 추적 관리해야 합니다.

④ 고품 폐기물

· 공급사는 유해하지 않은 고품 폐기물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 배출하며, 발생을 줄이도록 합니다. 또한, 공급사는 고품폐기물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문서화하여 추적 관리해야 합니다.

⑤ 대기오염 배출

· 공급사는 공정상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연무제, 부식성 가스, 미세먼지, 오존파괴물질 및 연소 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하고, 배출 현황은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 공급사는 대기 배출 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⑥ 물질 규제

· 공급사는 물질 재활용 및 폐기 정보를 표시하고 생산 및 제조 과정에서 특정 물질 사용 금지 및 제한과 관련된 모든 법규와 고객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⑦ 수자원 관리

· 공급사는 수자원 사용/방출량을 기록 및 모니터링하며, 수자원을 보호하고 오염 경로를 통제해야 합니다.
· 모든 폐수는 방출 또는 폐기하기 전 규정에 따라 특성을 파악하고, 감시하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급사는 자사 폐수 처리 및 폐수 억제 시스템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⑧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 공급사는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 및 보고하기를 권장합니다.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직접배출 Scope 1, 간접배출 Scope 2, 기타 간접배출 Scope3)을 추적하고 기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사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급사 행동규범

④ 윤리

공급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아래 윤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비즈니스 청렴성

· 공급사의 모든 사업 활동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공급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당이득, 갈취 및 횡령을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표방해야 합니다.

② 부당 이익 금지

· 공급사는 뇌물 또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 특정인에게 사업권을 획득 및 제공하거나, 그 외 부적절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 3 자를 통해 금품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및 수락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 또한, 반부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행해야 합니다.

③ 정보공개

· 공급사의 모든 거래는 투명해야 하며, 사업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공급사의 노무, 안전 보건, 환경 관리 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는 해당 법률 및 일반적인 산업계 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공개하며 위조나 허위 진술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④ 지식재산 보호

· 공급사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거래하는 고객 등 모든 업체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⑤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 공급사는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⑥ 신원보호 및 보복금지

· 공급사는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내부 고발 근로자에 대해 악명성이 보장되는 신원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들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⑦ 책임광물 관리

· 공급사는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조달되는 광물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 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공급사가 제조 또는 구매하는 코발트,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등의 책임 광물은 분쟁의 자금원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이어야 합니다.

⑧ 개인정보 보호

· 공급사는 업무상 모든 이해관계자(공급업체,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⑤ 경영 시스템

공급사는 본 규범의 내용과 관련된 경영시스템을 채택하거나 구축해야 합니다. 경영시스템은 관련된 법률 및 규정,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본 규범 준수, 본 규범과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① 기업의 준수 의지

· 공급사는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기업의 인권, 안전보건, 환경 및 윤리 정책 선언문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선언문은 현지 언어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전달, 게시해야 합니다.
 · 공급사는 적절한 실사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를 공급사의 경영 정책에 포함해야 합니다.

②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 공급사는 경영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 이행에 책임이 있는 고위 경영진 혹은 대표를 명시해야 합니다. 공급사의 대표자 또는 경영진은 경영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③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

· 공급사는 본 규범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여 이행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④ 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공급사는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준법, 환경, 안전보건, 노동 관행, 윤리 및 인권 관련 위험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 공급사는 각 위험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고, 파악된 위험을 통제하며, 정기적으로 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⑤ 개선 목표

· 공급사는 사회, 환경, 보건 및 안전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 대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대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⑥ 교육

· 공급사는 공급사의 정책, 절차, 개선 목표를 실행에 옮기고 관련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공급사 행동규범

⑦ 커뮤니케이션

• 공급사는 임직원, 고객 및 2차 공급사에 정책, 관행, 기대 사항 및 성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⑧ 근로자/이해관계자 참여 및 고충 처리

• 공급사는 근로자, 근로자의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와 공급사의 사업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 공급사는 근로자, 근로자의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로부터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효과적인 고충처리 절차를 포함한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 공급사는 근로자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고충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⑨ 감사 및 평가

• 공급사는 법률 및 규제 요건, 본 규범의 내용, 사회 및 환경 책임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체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⑩ 시정조치 절차

• 공급사는 내외부 평가 및 점검, 조사, 검토를 통해 확인된 미비사항을 적절한 시간 내에 시정하기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⑪ 문서화 및 기록

• 공급사는 규제 준수 및 회사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 및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사는 임직원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문서와 기록의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⑫ 공급망 참여 및 책임

• 공급사는 본 규범의 요구 사항을 2차 공급사에 전달하고 공급사가 이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

Stakeholder Engagement Policy

2024.04.01 제정

<p>목적</p>	<p>포스코DX는 고객, 구성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큰 기업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 여기고 있다. 본 정책은 공존·공생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소통해 나가기 위한 원칙과 실행방안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적용 범위</p>	<p>본 정책은 포스코DX의 국내외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당사와 각종 거래 관계를 갖는 협력사 및 그 임직원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p>
<p>기본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① 이해관계자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활동, 제품, 서비스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혹은 단체를 의미한다. 이해관계자에는 임직원, 고객,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및 시민단체, 국내외 투자자 등 다양한 집단이 포함될 수 있다. <p>②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실, 공정, 정직을 최우선의 가치기준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상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해야 할 불변의 가치로 인식하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주기적 소통을 통해 기업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사회책임경영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사항을 경영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p>③ 지역사회 존중 및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69호 또는 유엔 선주민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에 기초하여 지역사회 선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선주민의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가 실현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p>④ 지역사회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실행 방안

① 이해관계자의 식별, 참여 및 소통 절차 마련

-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식별하고, 그 영향의 수준을 파악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여기에 의사소통 채널의 운영 주체와 주기 및 방식이 포함되도록 한다.

② 지역사회 보호 및 참여 절차 마련

- 기업활동이 지역 주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역 주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에게 사업수행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이 이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사전에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기업활동이 지역 주민의 재정착 및 보상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 기업활동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와 협의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의 하에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

-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 성과를 이해관계자들과 주기적으로 공유한다.

④ 고충처리제도

- 기업활동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한다. 윤리신고센터, 사이버 신문고 등의 기존 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신고자, 피해자 및 협조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조사 신청 및 이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Governance

조세 정책

Tax Policy

2024.04.01 개정

목적	본 정책은 포스코DX가 준수해야 할 조세 정책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및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조세 법령을 준수하며 과세당국과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DX에게 적용되며, 세무 관련 임직원은 본 조세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포스코DX 전 사업장, 해외법인 및 포스코DX와 거래하는 고객, 협력사 및 계약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1 조세 법령 준수<ul style="list-style-type: none">포스코DX는 대한민국 및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의 세법과 그 제정 취지를 이해하고 원칙을 준수하여 정확하게 납부할 세액 산정 및 적기 납부 등 각 국가에서 부여되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2 과세 당국과의 투명한 상호협력적 관계 구축<ul style="list-style-type: none">포스코DX는 각 국가의 과세당국과 투명한 관계를 구축하고, 책임을 다하는 납세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조세신고 및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제도 및 유관 규정·절차의 발전적 개정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과세당국과 건설적이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3 국제 거래상 의무 이행<ul style="list-style-type: none">포스코DX는 국제 거래상의 세무 법규를 준수하고,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하거나 상업적 실질이 없는 조세 회피 거래 및 조세 피난처 등 저세율 국가로의 소득 이전 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한, 국내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OECD TP Guideline과 해당 국가의 법규에 부합하는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근거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며, 필요시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는다.4 지역사회 발전 기여<ul style="list-style-type: none">포스코DX는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철저한 세무관리를 통해 불합리한 과세는 행정청구 및 행정소송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조세불복을 진행한다. 또한 합법적 절세재원에 따른 성장이익을 사회와 공유한다.5 세무 리스크 최소화<ul style="list-style-type: none">포스코DX는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투자 등 경영전반에 대한 주요한 의사결정 전 세무 이슈를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실행 방안

① 조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구축

- 대내외 경영환경, 사업 구조 및 거래 분석을 모니터링하는 사내 세무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조세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리스크 평가 검토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 모든 세무 신고 납부기한을 준수하며, 조세와 관련된 자료를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② 이사회 및 세무담당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 이사회는 본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주체가 되며, 세무담당 임직원은 포스코DX의 조세 정책에 따라 각 국가의 세무 법규를 준수하고, 과세당국과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칙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외부 전문기관 활용

- 조세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기관의 객관적인 검토를 받고, 중요한 의사결정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조세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외부 전문기관은 해당 지역 및 국가 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가 풀(pool)에서 선정되며, 전문가 현황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④ 투명한 정보 공개

- 포스코DX는 대한민국 및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에서 납부하고 있는 세금 납부액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Governance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Policy

2024.04.01 개정 | 2023.03.22 제정 | 담당부서: 정보보호사무국 | 승인자: CISO/CPO

<p>목적</p>	<p>본 정책은 포스코DX의 정보자산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포스코DX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임직원 및 협력업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임직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적용 범위</p>	<p>본 정책은 포스코DX 및 그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포스코DX는 포스코DX와 거래하는 협력사 및 그 임직원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p>
<p>기본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보보호 국제표준과 국내외 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기술 및 인력 등 정보자산을 보호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② 임직원은 스스로 정보보호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개선한다. ③ 임직원은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고, 정보보호 활동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킨다. ④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는 목적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p>실행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① 정보보호관리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며, 보안사고로부터의 산업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한다. · 보안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절차를 구축 및 운영하고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토를 실시한다. · 주요 정보자산에 대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 모든 임직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상시 관리점검 체계를 수립해 정보 보안의 효과성을 확보한다. <p>② 개인정보 보호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 등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모든 단계에 걸쳐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및 자유와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주관부서’는 임직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취급관리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p>③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 임원의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 임원은 정보보호정책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총괄하고 관리체계를 수립 및 관리한다. · 담당 부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취약점을 개선한다. <p>④ 보고 및 징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담당 임원 또는 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 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징계할 수 있다.

Governance

반부패 준수 지침

Anti-Corruption Compliance Guidelines

2025.04.01 개정 | 2011.04.18 제정 | 담당부서: 정도경영실 | 승인자: 상임감사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주식회사 포스코디엑스(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국내 반부패 법령과 글로벌 법규 및 스탠더드(이하 "부패방지 관련 법령")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회사의 본사 및 해외조직에 적용된다. 단,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윤리규범(PA1100)」, 「윤리규범 실천 지침(IA1101)」 등 회사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부패"란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유무형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이러한 이득을 얻도록 하는 일체의 일탈 행위를 의미한다.
- ② "공직자 등"이란 대한민국 공무원과 외국 공무원(현지 주재 한국 공무원 포함)을 포함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가. 회사가 소재한 해당 국가(이하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
 - 나. 해당 국가 정부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다. 해당 국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
 - 라. 해당 국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 업무 종사자
 - 마. 해당 국가 내 공직 후보자 및 정당의 임직원
 - 바.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사. 기타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
- ③ "제3자"는 명칭을 불문하고 다음의 경우를 의미한다.
 - 가. 회사를 위하여 사업 수주 및 교섭, 통관, 인허가, 세무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
 - 나. 사업 수주 및 교섭, 통관, 인허가, 세무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하는 중개인, 컨설턴트, 전문 자문가
 - 다. 기타 거래업체, 파트너사, 합작투자사 등
- ④ 금품 등은 금전 및 유가물, 급행료를 포함한다. "유가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유가증권, 부동산, 식사, 선물, 골프
 - 나. 교통, 숙박 등 또는 그 경비
 - 다. 제품,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권 및 할인
 - 라. 정치후원금(Political Contribution) 및 자선기부
 - 마. 채무의 인수 또는 면제, 취업 제공(인턴십 포함),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 ⑤ "급행료"는 일상적, 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 등에게 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비자발급 등 행정서류의 접수 및 처리
 - 나. 제품의 운송 등과 관련된 통관, 선적 및 하역
 - 다. 전화 개통, 전기 및 수도 공급 등

조직 및 책임과 권한

1 조직 및 책임과 권한

- ① 부패방지에 관하여는 정도경영 업무 담당부서가 전담 조직으로서 해당 업무를 주관하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부서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② 해외사업 부패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사업 분야에 관하여 별도의 부패방지 전담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직이 정도경영 업무 담당부서를 대신하여 해외사업 부패방지 전담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업무 절차

① 일반원칙

- ① 국내(대한민국) 주요 반부패 법령으로는 형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하 '국제뇌물방지법')이 있다.
 - 1. 대한민국 '형법'의 뇌물죄는 대한민국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 대한 뇌물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 2.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 3. '국제뇌물방지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② 주요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로는 미국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Bribery Act, OECD 뇌물방지협약, UN 글로벌컴팩트 등이 있다.
 - 1. 'FCPA'는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등을 대상으로 미국 외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을 금지하고 회계와 관련하여 정확한 장부기록 및 관리 등 내부통제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2. 'Bribery Act'는 영국기업과 영국에서 사업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영국 외 국가의 공무원,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뇌물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 3. 'OECD 뇌물방지협약'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국제 협약이다.
 - 4. 'UN 글로벌컴팩트'는 기업의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한 대응을 규정하고 있다.
- ③ 임직원은 상기 부패방지 관련 법령 외에도 사업을 수행하는 현지의 반부패 관련 법규를 비롯하여 임직원이 공직자 등에게 뇌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모든 국내외 반부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비록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현지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 현지 법규, 이 지침, 「윤리규범(PA1100)」, 「윤리규범 실천 지침(IA1101)」 등 회사의 다른 사규 등이 상충하는 경우 가장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② 금품등의 제공 및 수령의 제한

- ①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게 사업상 이익을 위한 부정한 의도로 접대 및 편의와 관련하여 금전 또는 유가물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품의 판촉, 계약체결 및 사업관련 상호이해 증진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한 접대 및 편의는 통상적 수준에서 주고받을 수 있으며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윤리규범 실천 지침(IA1101)」에 따른다.
 - 1. 업무상의 접대 및 편의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 2. 업무상의 접대 및 편의의 수준은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3. 업무상의 접대 및 편의라도 같은 공직자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빈번하게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 4. 관련 지출내역은 회사의 장부 등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 ② 임직원이 공직자 등에 대하여 식사, 선물 등을 호의나 예의의 표시로 또는 친목을 증진하기 위해 제공할 경우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1. 식사, 선물 등은 상대방의 급여수준에 비하여 소액이어야 한다.
 - 2. 식사, 선물 등은 분명한 명분으로 필요한 시점에 한하여 적법하고 적절한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 3. 식사, 선물 등 접대금액의 범위는 국내·외 관련 법규와 「윤리규범(PA1100)」 및 「윤리규범 실천 지침 (IA1101)」에 따른다.
- ③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윤리규범 실천 지침(IA1101)」에 따른다.
 - 1.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받아서 안된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2.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촉, 시연이나 설명,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 등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 3. 편의 제공에 따른 발생 비용은 공직자 등에게 지급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항공사, 호텔 등 편의 이용처에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 ④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게 일체의 급행료를 제공할 수 없다.

③ 제3자에 관한 사항

- ① 부패방지 관련 법령에서는 제3자가 공직자 등에게 제6조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3자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제3자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다음의 업무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특정 제3자에 의한 잠재적 부패방지 위험의 정도에 따라 사전 실사, 모니터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자에 관한 업무 절차는 다음을 따르되, 상세한 사항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제3자와의 계약체결 전, 계약의 유형, 위험신호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 평가를 하고,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실사를 수행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제3자와 계약체결 시에는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반부패 서약서"를 징구하고, "제3자 거래 표준 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3.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해야 하며, 여기에는 추가 실사, 감사,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임직원은 제3자를 통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전담조직에 문의하여야 한다.
 - 4. 또한 임직원은 제3자로부터 위반행위를 통지받거나, 제3자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전담조직에 신고하여 회사가 이를 시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무 절차

4 회계 기록 및 관리

- ① 임직원은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청구서, 영수증 및 기타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적절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지출 또는 자산의 보유는 엄격히 금지된다.
- ② 또한, 장부 및 기록의 유지뿐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는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 규정(P14200)」에 따른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따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5 반부패 준수교육

- ① 부패방지 전담 조직은 임직원을 상대로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반부패 정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부패방지 전담 조직은 반부패 이슈가 과거에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사업장의 임직원을 상대로 수시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2항에 따라 별도의 부패방지 전담 조직을 둔 해외사업장이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해외사업장의 임직원을 상대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중 적절한 방식을 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6 반부패 관련 위험 평가 및 점검

- ① 부패방지 전담 조직은 관련 조직과 함께 임직원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이 지침을 포함한 사규 위반 여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요한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 및 대표 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이 지침을 포함하여 사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한편, 그러한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및 대표이사는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이 지침을 포함한 사규 위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부패방지 전담 조직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전사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7 반부패 관련 이슈 발생 시의 대응 절차

- ①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패행위 또는 혐의에 관하여 국내외 정부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이하 '정부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의 대응은 법무 담당 부서에서 주관한다.
- ② 정부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되거나 개시될 예정임을 알게 된 경우, 법무 담당 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정부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될 경우, 모든 관련 임직원은 그 조사 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반드시 법무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답변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①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이 지침을 포함한 사규 위반에 해당되거나 그 위반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임직원 또는 제3자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이 지침을 포함한 사규를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부패방지 전담 조직에 신고 하여야 한다. 임직원이 위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윤리행위 신고보상과 면책 지침(IA1104)」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고 방법과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 방법은 「비윤리행위 신고 보상과 면책 지침(IA1104)」에 따른다.
- ② 부패방지 전담 조직은 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내부감사 규정(PA1200)」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신고자 신분보호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비윤리행위 신고보상과 면책 지침(IA1104)」에 따른다.
- ④ 신고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그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이 지침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경우 「비윤리행위 신고보상과 면책 지침(IA1104)」에 따라 부패방지 전담조직은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9 처벌

- ① 부패방지 전담 조직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이 지침을 포함한 사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내부감사 규정(PA1200)」에 따라 처리한다.
- ② 「내부감사 규정(PA1200)」에 따른 처분과 별도로, 회사는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이 지침을 포함한 사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그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자신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이 지침을 포함한 사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된 임직원 개인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보칙

1 시행세칙 및 해석

- ① 이 지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이 지침의 도입 및 시행과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한 경우 부패방지 전담조직과 협의를 거쳐 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③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나 규정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부패방지 전담조직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Governance

윤리규범

Code of Ethics

2024.09.06 개정 | 2010.02.20 제정 | 담당부서: 정도경영그룹 | 승인자: 대표이사

윤리 현장

우리 포스코그룹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선의 가치임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 포스코인은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한다'는 윤리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법과 윤리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진실(Integrity), 존중(Respect), 공감(Mutual Empathy)을 지향점으로 하여,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 활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임직원 차원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구성원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추구하며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의 정착을 통해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야 한다. 모든 구성원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한다. 고객 차원에서는 고객의 신뢰와 성공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여 고객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주주 차원에서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증대시켜야 한다. 사업 파트너 차원에서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업 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공존하는 기업 생태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사회에 소속된 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포스코인은 우리의 행동이 스스로의 자부심, 그리고 회사의 가치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우리의 문화와 비즈니스 운영의 핵심에 윤리의식과 청렴성을 확고히 두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윤리 원칙

제1절 모든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① 윤리규범 준수 의무

- ① 우리는 주식회사 포스코디엑스(이하 "회사"라 한다)가 사업을 영위하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관련 법규 및 회사의 규정과 지침을 준수합니다.
- ② 우리는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기업평판 유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 ③ 우리는 윤리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신고의무 및 비밀 보장

- ① 우리는 나 또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행동이 윤리규범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급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즉시 신고 또는 상담합니다.
- ② 우리는 윤리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조사에 적극 협조합니다.
- ③ 우리는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신고자 및 조사참여자를 상대로, 절대로 보복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③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

- ① 우리는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윤리규범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 윤리규범 위반 사항의 신고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 및 조사참여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② 특히, 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 성윤리 위반의 4대 비윤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됨을 알고 있습니다. 4대 비윤리는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 1. 금품수수: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이상의 금전 및 물품을 받는 행위
 - 2. 횡령: 회사公款이나 자산을 불법적으로 착복하는 행위
 - 3. 정보조작: 업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은폐·유출하는 행위
 - 4. 성윤리 위반: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

제2절 임원과 직책자의 특별한 책임

임원과 직책자는 솔선수범하여 윤리를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의 비윤리 행위를 예방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윤리 원칙

① 윤리 우선의 의사결정

경영/관리 의사결정 상 회사의 이익과 윤리가 상충될 경우 윤리 우선의 의사결정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윤리규범의 이해와 준수

- ① 직무 수행 시 윤리적인 행동이란 무엇인지 실제로 보여주며, 대내외적으로 롤모델로서의 본분을 다합니다.
- ② 소속 직원이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 지침(A1101)」의 내용과 준수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상담해야 합니다.
- ③ 담당 조직 내 비윤리가 없는지 상시 점검하며,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윤리에 대해서는 원인 발굴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의 선제적인 예방 대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 ④ 소속 직원들이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③ 비윤리행위 신고와 상담

소속 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윤리경영 담당부서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합니다.

④ 경영책임

비윤리행위를 한 경우 무한책임을 지고, 부하직원의 비윤리행위 시에도 관리책임을 집니다.

행동 강령
(Code of Conduct)

제1절 기본 윤리와 관련 법령 준수

①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 ① 자신의 이익을 위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 이익에 반하는 업무상 압력, 지시,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의 모든 예산 자원 및 자산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일체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③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는 존중하되, 회사 내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회사의 자금, 인력, 시설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의 정보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 ①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지적 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히 보호합니다.
- ②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습니다.

③ 공정하게 경쟁하고 거래합니다

- ①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절차를 구축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UN부패방지 협약, FCPA,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내외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를 준수합니다.
- ② 사업 파트너 및 거래회사에게 불합리한 업무 조건이나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권하지 않습니다.

제2절 신뢰의 인간존중 문화 조성

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듭니다

- 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함께 추구합니다.
- ② 임직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② 공정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 ①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 ② 역량 개발과 자기개발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며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에 근거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③ 지연이나 학연 등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우대하는 건강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③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 ①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UN글로벌compact,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관련 기준을 지지하며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② 구성원 개개인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언어적 신체적 고통, 따돌림, 협박과 같이 구성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③ 정신적/육체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정한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등 고용조건을 보장합니다.
- ④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 강령
(Code of Conduct)

제3절 고객가치 실현

① 고객만족을 실현합니다

- ①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고객 중심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개선활동에 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② 고객가치를 창출합니다

- 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② 고객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합니다.

③ 고객신뢰를 확보합니다

- ① 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위험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합니다.

제4절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④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 ①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여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증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② 주주의 정당한 제안을 존중하고, 주주와 상호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⑤ 투자자와 투명하게 소통합니다

- ① 투자자들의 투자이사결정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고 충실하게 제공합니다.
- ② 재무정보는 정확한 거래사실을 기반으로 적절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통해 산출하며, 모든 회계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제5절 거래회사와의 상생

① 거래회사와 상호신뢰를 구축합니다

- ① 거래회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② 책임감 있는 회사를 거래회사로 선정하며, 사업장 안전, 임직원 인권,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② 거래회사와 공영(共榮)을 추구합니다

- ① 거래회사와 성과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합니다.
- ② 거래회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거래회사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③ 거래회사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제6절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

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 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조세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 ②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학문 등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합니다.
- ③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합니다.

②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힘씁니다

- ①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등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 ② 친환경생산 공정 도입과 환경오염 방지 최첨기술 등의 적용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최선을 다합니다.
- ③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보칙

① 시행세칙 및 해석

- ① 구체적 실천을 위한 기준 및 필요한 세부사항은 「윤리규범 실천 지침(IA1101)」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윤리규범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거나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 ③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규범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posco
포스코DX